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법제사법위원장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9월 24일, 김기표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9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2025. 11. 12.)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1. 24.) 상정 ·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2025. 11. 26.)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
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기표의원)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

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 또는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은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피부착자가 피해자에게 접근 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도 직접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신자료를 피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두텁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병섭)

개정안은 스토킹 행위 등으로 인한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피부착자의 위치추적 수신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수신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 전

송하는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인 위치정보를 법에서 정한 목적외로 유출·사용한 경우에 대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이 정하고 있는 법정형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김용민위원)

스토킹행위자의 접근금지 대상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접근금지 위반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음.

6. 심사결과

수정의결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잠정조치에 따른 접근금지 대상에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이 포함되므로 접근금지 위반 사실 통지 대상에도 동거인과 가족을 추가하고, 제16조제2항을 준용하는 제27조 및 제31조를 위반할 경우 제36조제3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도록 하며, 부칙 제4조를 삭제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피해자에게도”를 “피해
자등(「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접근 금지의 대상이 된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도”로 한다.

안 제31조의8제2항제5호 중 “피해자에게”를 “피해자등에게”로 한다.

안 제36조제3항 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2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안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1조의6(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① ~ ③ (생략)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의6(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u>다만,</u> <u>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u>	제31조의6(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 ----- ----- ----- ----- ----- ----- ----- <u>피해자 등</u> <u>(「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접근 금지의 대상이 된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의미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에게도</u> ----- ----- -.

1. ~ 4. (생략) ⑤ ~ ⑧ (생략) 제31조의8(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① (생략) ② 스톱킹행위자 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조회·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1. ~ 4. (생략) <u><신설></u> ③ · ④ (생략) <u><신설></u>	1. ~ 4.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31조의8(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보호관찰소의 장이 제31조의6제4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u>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u>	1. ~ 4. (개정안과 같음) ⑤ ~ ⑧ (개정안과 같음) 제31조의8(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 1. ~ 4. (개정안과 같음) 5. ----- ----- ----- -----<u>피해자등에게</u>----- ----- ----- ③ ~ ⑤ (개정안과 같음)
--	--	--

	<u>사항 외에 스토킹 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 · 사용 · 열람 · 조회 · 제공 · 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6조(벌칙) ① · ② (생략) ③ 수신자료(스토킹 행위자 수신자료를 포함한다)를 관리하는 자가 <u>제16조제2항</u> 또는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6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벌칙)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 -----<u>제16조제2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 ----- ----- -----.
<u><신 설></u>	④ <u>제16조제2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의8제2항에 따라 수신자료</u>	④ (개정안과 같음)

	<u>(스토킹 행위자 수신 자료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사람이 본래의 목적 외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부칙 제4조(별칙 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 또는 제31조의8제2항에 따라 제공된 수신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u><삭 제></u>
--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위반할 우려가 있어 피해자 등 특정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15조의2에 따라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27조 중 “제15조, 제16조”를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로 한다.

제31조 중 “제15조제1항, 제16조”를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제16조”로 한다.

제3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등(「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접근 금지의 대상이 된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제31조의8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31조의6제4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피해자등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사용·열람·조회·제공·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2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6조제2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의8제2항에 따라 수신자료(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사람이 본래의 목적 외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 및 제

31조의6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 또는
잠정조치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수신자료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5호 및 제31조의8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 또는 잠정조
치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의2(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위반할 우려가 있어 피해자 등 특정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u>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① (생략) ② 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조회·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1. ~ 4. (생략) <u><신 설></u>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5. <u>보호관찰소의 장이 제15조의 2에 따라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u>
③ ~ ⑦ (생략) 제27조(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13조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준용) ----- -----

제4항 · 제6항 제1호 · 제8항 제1호 · 제9항, 제14조, <u>제15조</u> ,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u>제15조</u> , <u>제15조의2</u> , <u>제16조</u> ----- ----- -----.
제31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 명령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3조 제4항 · 제6항 제1호 · 제8항 제1호 · 제9항, 제14조, <u>제15조 제1항</u> , <u>제16조</u> ,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1조(준용) ----- ----- ----- ----- ----- ----- <u>제15조 제1항</u> , <u>제15조의2</u> , <u>제16조</u> ----- ----- -----.
제31조의6(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① ~ ③ (생략)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1조의6(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u>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등(「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접근 금지의 대상이 된 피해자</u>

1. ~ 4. (생략) ⑤ ~ ⑧ (생략) 제31조의8(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① (생략) ② 스톱킹행위자 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조회·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1. ~ 4. (생략) <u><신설></u> ③ · ④ (생략) <u><신설></u> 제36조(벌칙) ① · ② (생략)	<u>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u> <u>게도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u> 1. ~ 4.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31조의8(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보호관찰소의 장이 제31조의</u> <u>6제4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u> <u>피해자등에게 통지하기 위하</u> <u>여 사용하는 경우</u>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u> <u>규정한 사항 외에 스톱킹행위</u> <u>자 수신자료의 보존·사용·열</u> <u>람·조회·제공·폐기 등에 관</u> <u>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u> <u>으로 정한다.</u> 제36조(벌칙) ① · ② (현행과
---	--

③ 수신자료(스토킹 행위자 수신자료를 포함한다)를 관리하는 자가 <u>제16조제2항</u> 또는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u><신 설></u>	같음) ③ ----- ----- -----<u>제16조제2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 ----- -----. ④ <u>제16조제2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의8제2항에 따라 수신자료(스토킹 행위자 수신자료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사람이 본래의 목적외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	---